[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4. 29. (금)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접수는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며, 코로나19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받습니다.**

□ **현장방문시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와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또한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는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현황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주택관리공단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대표번호(031-378-104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이 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1. (임대조건) 완화 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은 일반입주자격자와 동일하게 적용
2. (거주기간)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4.2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입주자(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되며,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바이러스로 비대면방식인 "인터넷청약신청"** 으로만 진행됩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탑석센트럴자이 장기전세
주택관리번호	**2022980055**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22.05.16 ~ 5.18	'22.06.02.	'22.06.02 ~ 6.10.	3개월소요	'22.9.23.

-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자는 주택관리공단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단지명	문의처	전화번호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031-378-1040

1. 주택단지 개요

지역	단지명	단 지 위 치	전체호수	GH 관리호수	최초입주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2,573	174	'22.03

- 해당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해당**단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금번 공급대상 주택은 1101동임)

지역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관리호수	공급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입주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밖의 공용	합계						
의정부	탑석 센트럴자이	49A	49.93	17.42	32.56	99.91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도시가스)	164	149	0	**149**	**51**
		49B	49.91	17.76	32.54	100.21						
		49C	49.94	17.60	32.57	100.11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 49A, 49B, 49C는 통합하여 **49형**으로 모집합니다.
- 금회 선정된 분은 공가149호와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자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순번 도래 시 별도 계약체결 통보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원)			비고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탑석센트럴자이	49형	211,901,000	21,190,000	190,711,000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은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4. 2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table>
<tr><td>무주택</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td></tr>
<tr><td>세대
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 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d rowspan="3">*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각종 사유로 자격검증이 불가한 세대원(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td></tr>
</table>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득</td><td>
<table>
<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colspan="2">당초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90%이하)</th><th>금회 모집공고시 소득완화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이하)</th></tr>
<tr><td>1인가구</td><td>90%</td><td>2,890,902원 이하</td><td>4,818,170원 이하</td></tr>
<tr><td>2인가구</td><td>80%</td><td>3,875,496원 이하</td><td>7,266,555원 이하</td></tr>
<tr><td>3인가구</td><td rowspan="6">70%</td><td>4,492,996원 이하</td><td>9,627,849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5,040,566원 이하</td><td>10,801,214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5,128,250원 이하</td><td>10,989,108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5,445,878원 이하</td><td>11,669,738원 이하</td></tr>
<tr><td>7인가구</td><td>5,763,505원 이하</td><td>12,350,367원 이하</td></tr>
<tr><td>8인가구</td><td>6,081,132원 이하</td><td>13,030,997원 이하</td></tr>
</table>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td></tr>
<tr><td rowspan="2">자산</td><td>부동산</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td></tr>
<tr><td>자동차</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td></tr>
</table>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관계법에 따른 본래 장기전세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공급일정

신청방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발표
인터넷	'22.05.16(월) ~ 5.18(수) (10:00 ~ 17:00)	'22.06.02(목) 16:00 이후 (https://apply.gh.or.kr)	'22.06.02(목) ~ '22.06.10(금) * 등기우편 제출 ※ '22.06.10.(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장소:** (우: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탑석자이센트럴자이 담당자 앞	'22.09.23(금) 16:00이후 [예정]
현장 (만65세이상고령자, 장애인으로 예약자만 해당)	'22.05.16(월) ~ 5.17(화) (11:00 ~ 15:00)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결과는 입주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 **청약정보 → 분양/임대공고 → 주택**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신청자격 및 순위 구분없이 접수기간 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4.29.)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현장접수 일정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접수)

신청자격	현장접수 및 구비서류제출	현장접수처
월평균소득 150%이하	'22.05.16(월) ~ 5.17(화) (11:00 ~ 15:00)	**현장청약 예약자에 한하여 문자발송 예정** <예약접수 인증문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현장청약) 예약

□ 금회 모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https://apply.gh.or.kr)을 통해서 온라인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다만,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청약 예약	• **예약기간 : 2022. 5. 9(월) ~ 2022.05.11.(수)까지 (10:00~17:00)** • **접수방법 :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전화예약** • **(예약)전화번호 : 031-378-1040(내선2번)**

1) 현장청약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2) 예약 접수완료 후 주택관리공단에서 <예약접수 인증문자>를 전송하며, 현장접수 당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인증문자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입장이 불가 합니다.
3)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야만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4) 정확한 접수를 위하여 현장청약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청약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또는 체온37.5도 이상인 분은 현장청약에 제한됩니다.
6) 방문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7) 동반가족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체온37.5도 이상일 경우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8) 현장청약 시에는 개인별 발열체크, 소독, 청약 접수처 동시입장 인원 제한 등으로 장시간 대기가 예상됩니다.
9) 현장계약 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담이 불가합니다.

6. 신청방법

■ 장기전세주택 신청안내

▪ 청약절차 및 일정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등기우편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22.05.16.(월) ~'22.05.18.(수) 10:00~17:00	'22.06.02.(목) 16:00 이후	'22.06.02.(목) ~'22.06.10.(금)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약3개월 소요	'22.09.23.(금) 16:00 이후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우편접수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	사회보장 정보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 GH주택청약센터는 PC의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능별 권장 브라우저는 [인증서 로그인]-[권장하는 브라우저 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공동인증서 준비 → ②GH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 ③인터넷신청 →④ 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공고선택	주택단지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2.04.29) 기준 의정부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의정부시에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06.02.)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당첨결과 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우리 공사 요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안내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명: 탑석센트럴자이 장기전세주택 , 주택관리번호 2022980055]	
구 분	**조회방법**
온라인발급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선택→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맞춤형 임대주택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은행(직접)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터넷 홈페이지(www.gh.or.kr)→GH주택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신청마감일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기한 **['22. 06. 02(목) ~ '22. 06. 10(금)]** 에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2. 6. 1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으로 예약자에 한함.)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장애인
※ 현장접수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신청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장접수 예약	예약접수 인증문자 수신	신청서류 준비	현장접수
(전화접수) ☎ 031-378-1040	현장 접수시 인증문자 확인	- 기본서류 및 기타 보완서류 - 신분 확인서류	- 장소 : 예약인증 문자확인

▪ **현장 접수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8.신청서류(14페이지~15페이지)"에서 확인**

▪ **현장 신청자**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입주자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 분</th><th>입주자선정 방법</th></tr>
<tr><td>전용면적
50㎡미만</td><td>
1. 소득자격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tr><th>가구원수</th><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th></tr>
<tr><td>1인가구</td><td>4,818,170원 이하</td></tr>
<tr><td>2인가구</td><td>7,266,555원 이하</td></tr>
<tr><td>3인가구</td><td>9,627,849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10,801,214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10,989,108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11,669,738원 이하</td></tr>
<tr><td>7인가구</td><td>12,350,367원 이하</td></tr>
<tr><td>8인가구</td><td>13,030,997원 이하</td></tr>
</table>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td></tr>
</table>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전용면적 50㎡미만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순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추첨방식은 공사의 추첨방식으로 결정함)

■ 배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2003.04.29. 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⑨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당해 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여,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8.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앞-뒤 2장)을 출력하여, 내용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만65세고령자•장애인으로 현장접수 예약자 : 현장신청시 제출** ※ 서명란에 이름을 정자로 기재(사인이 아닌 성명기재) ※(주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인터넷 공고문 양식참고	1통
(신청자)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2980055 (탑석센트럴자이)** **※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인정회차에 따른 배점 산정.**	한국부동산원홈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은행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각 1통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의정부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록되어 세대주와 배우자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예 : 동거인)등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각 1통
(신청자) 신분증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앞면 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1통

■ **기타 보완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3자녀이상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각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실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등기우편 제출)**

- **주 소 : (우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 **받는곳 :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문 의 : 031-378-1040(내선2번)**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2022.09.23(금) 16:00 이후]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할 입주자수(149호)의 동·호는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 분양안내 → 분양/임대공고**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당첨결과조회(개별확인가능)**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모집 → 예비입주자모집안내**

■ 계약안내

- 당첨 발표 후 주택관리공단(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계약서비스 → 예비입주자조회→ 입주순위(개별확인 가능)**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031-378-1040)의 계약담당부서에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주택관리공단(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자격완화 사항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①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격완화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나, 자격완화 계약자는 갱신계약이 일부 제한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td><td>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tr>
<tr><td>10%이하</td><td>100%</td><td>105%</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05%</td><td>11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50%초과</td><td>퇴거</td><td>퇴거</td></tr>
</table>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래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딥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td></tr>
<tr><td>입주자
선 정</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당첨사실은 취소되며,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td></tr>
</table>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방법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후 **순번확인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타 주택 청약시 해당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환경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에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번)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등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관련항목	유의사항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시설이용등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관리규약에 따름)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단지명	구 분	적용 여부
탑석센트럴자이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12. 단지여건 등 안내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구 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는 송산로가 북서측에는 용민로가 연접하여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1101동 서측, 1105동 남측과 1115동 및 1116동 남서측에는 소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6동 북측에는 '소공원-1'용 노외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통행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및 소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시민로'변, '소공원 1'변)는 주차 차단기로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행자통로는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1112동과 1113동 사이부터 1109동과 1114동 사이 보행통로는 공공의 보행통로로 이용됩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자이안센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등)로 인해 조망권침해 및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 1109동, 1110동 및 1112동 지하층, 게스트하우스 1101동 1층, 도서관 및 독서실 1103동 북측-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및 어린이집 1103동 북측, 경로당 1110동 1층- 근린생활시설 : 1101동 북측 및 1108동 남측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3,348대, 근린생활시설 14대로 총 3,362대(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가 상이합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주차장은 1101동~1112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3층 주차장은 1109동~1116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101동 북측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 및 1108동 전면 지하 1층 주차장 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의 테라스 및 팬트하우스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부동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붙임3] 주택단지별 안내사항

단 지 명	안 내 사 항
탑석센트럴자이	• **2022년 3월 최초입주 단지로 2022년 3월부터 20년까지 임대 가능** • 최초계약 2년, 2년단위 갱신계약 체결(자격요건 확인)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인 터 넷	www.gh.or.kr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www.kohom.or.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입주정보→예비입주자 모집→예비입주자 모집안내

2022. 4. 29.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별첨1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별첨1 뒷면)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2.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첨2)

위 임 장

위임하는 자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상기 본인은 (_____) 주택에 대한 _____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2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인)

* 인감날인

위임받는 자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하는 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 1.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귀하